

수강 및 후기(4 Q) 기말고사에 대한 주의사항

곧 기말고사가 시작되므로, 부정행위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알립니다.
 본교에서는 출석·시험 등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
 학생 징벌에 관한 규칙 제6조 5항(징계 처분의 대상 행위)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내용	징계 내용
시험 등에서의 부정행위로, 그 수법이 매우 악질적인 경우 • 대리 시험 • 집단 공모를 통한 조직적 커닝 • 과거 수차례 커닝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	퇴학 또는 정학
본교가 실시하는 시험·과제 등에서의 부정행위 • 커닝 • 타인과의 답안지 교환 • 타인의 레포트·작품 등을 도용하여 제출 • 자신의 레포트 및 제작물을 타인의 이름으로 대리 제출 • 시험 감독관의 주의·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정학 또는 견책 후, 해당 학기에 이수하고 있는 모든 과목 의 평가를 "불가"로 함
본교가 실시하는 수업 등의 출석확인에서의 부정행위 • 카드 터치에 대항 ※본인 이외의 학생증으로 카드 터치를 하는 행위 • 대리 출석 등	정학 또는 견책 후, 부정을 행한 과목의 평가를 "불가"로 함

【징계에 관한 용어 설명】

- 퇴학 :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정학 : 등교 정지를 명하고, 자택에서 근신시키는 것
- 견책 : 문서 및 구두에 의한 주의 및 훈계 조치 하는 것
-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보증인(입학 시 보증서에 서명한 분/기본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 조치

【카드 터치 관련 부정행위에 관해】

학생증의 대여에 대해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생증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로 카드 터치를 행한 학생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징벌 규칙 등의 공개에 대해】

학생징벌에 관한 규칙 및 주의사항은 이하에 기전·공개되어 있으므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계에 관한 규칙” 및 “징계처분에 관한 기준” (디지캠의 서류·링크에서 공개)
 • 학생가이드 (디지캠의 서류·링크에서 공개)
 • 학생증 뒷면

【부정행위의 발견·대응에 대해】

교직원이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징벌을 심의하는 학내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학생자신이 **부정행위에 관해 인식 및 자각이 없는 경우라도**, 징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하의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 보증인에의 연락
- 징계 처분 내용의 학내 공개
- 해당 학기에 이수하고 있는 모든 과목, 혹은 부정을 행한 과목의 평가를 “불가”로 함
 ※이에 따라, **진급·졸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2015년도 후기에 이미 여러명의 학생이 상기의 부정 행위와 관련, 징벌 심의를 위한 학내 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실제로 부정행위에 의해 해당 학기의 모든 이수 과목에서 “불가” 평가를 받은 학생도 나온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정 행위의 유혹에 저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